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5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2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일괄 삭제로 시민 이해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,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(안 제3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</u></p>	<p>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	<p>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 지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.

제7조제1항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”을 “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</p> 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신기술창업센터</u> 2. 삭 제 3. 삭 제 4. <u>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</u> 5. <u>서울애니메이션센터</u> 6. <u>서울패션디자인센터</u> 7. <u>서울인쇄센터</u> 8. <u>서울디자인센터</u> 9. <u>서울무역전시장</u> 10. <u>DMC(Digital Media City)첨단 산업센터</u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(이하 “시책 및 육성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[별표]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칭	기능
서울신기술창업센터	중소기업 창업지원
삭제(2005.04.14)	
삭제(2005.04.14)	
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	중소기업제품의 전시·판매 및 홍보 등
서울애니메이션센터	애니메이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패션디자인센터	패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인쇄센터	인쇄산업 육성·지원
서울디자인센터	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
서울무역전시장	중소기업제품 전시·홍보
DMC첨단산업센터	DMC단지 활성화 및 기업 지원

제7조(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제>